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보호조치 및 보조인의 선임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21조제3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윤 상 열)